

제 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0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50m)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 6 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인의 신분증이나 주주참석증),
대리인의 신분증

6.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주식회사 비피유흐olding스

대표이사 오 상 균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은행장 윤 종 규

Ⅲ. 재무제표(별도)

1.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5기(2016.12.31)		제4기(2015.12.31)	
자 산				
유동자산		40,366,051,329		10,863,381,412
현금및현금성자산	3,232,092,537		9,467,820,9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0,152,506		18,453,438	
기타유동금융자산	513,768,148		1,005,000,000	
기타유동자산	2,840,021		371,889,777	
당기법인세자산	17,198,117		217,257	
단기금융상품	36,100,000,000			
비유동자산		13,509,388,914		2,075,359,109
종속기업투자주식	2,341,529,150			
매도가능금융자산	1,987,5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885,671,885	
유형자산	187,857,016		154,887,224	
무형자산	6,161,699,800		34,800,000	
기타비유동자산	2,830,802,948			
자 산 총 계		53,875,440,243		12,938,740,521
부 채				
유동부채		200,073,474		133,186,49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343,492		107,926,004	
기타유동부채	26,729,982		25,260,488	
비유동부채		39,701,411		141,177,732
순확정급여부채	39,701,411		141,177,732	
부 채 총 계		239,774,885		274,364,224
자 본				
자본금	3,685,675,000		1,661,400,000	
기타불입자본	59,654,960,736		13,822,80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1,312,500,000)			
이익잉여금	(8,392,470,378)		(2,819,823,703)	
자 본 총 계		53,635,665,358		12,664,376,29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3,875,440,243		12,938,740,521

2.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5기(2016.1.1~12.31)	4기(2015.1.1~12.31)
매출	38,749,581	-
영업비용	6,046,962,787	1,307,222,903
영업이익(손실)	(6,008,213,206)	(1,307,222,903)
기타영업외수익	570,322,809	20,380,924
기타영업외비용	54,014,620	8,938,64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491,905,017)	(1,295,780,626)
당기순이익(손실)	(5,491,905,017)	(1,295,780,626)

3.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5기(2016.1.1~12.31)	4기(2015.1.1~12.31)
당기순이익(손실)	(5,491,905,017)	(1,295,780,626)
기타포괄손익	(1,393,241,658)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0,741,658)	(87,013,89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12,500,000)	
당기총포괄이익(손실)	(6,885,146,675)	(1,382,794,520)

4. 결손금 처리 계산서(안)

제 5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 4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7년 3월 24일

(단위:원)

과 목	제 5 기		제 4 기	
I.미처리결손금		(8,392,470,378)		(2,819,823,70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724,367,087)		(1,428,586,461)	
2. 보험수리적손익	(176,198,274)		(95,456,616)	
3. 당기순이익(손실)	(5,491,905,017)		(1,295,780,626)	
II.결손금처리액				
1. 자본잉여금이입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III.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392,470,378)		(2,819,823,703)

5. 자본변동표

제 5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 4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단위: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신주청약증거금	소 계			
2015.1.1(전기초)	996,400,000	472,850,000	35,499,500	508,349,500	-	(1,437,029,183)	67,720,317
당기순이익(손실)	-	-	-	-	-	(1,295,780,626)	(1,295,780,626)
주식청약증거금	-	-	8,978,650,500	8,978,650,500	-	-	8,978,650,500
유상증자	665,000,000	4,335,800,000	-	4,335,800,000	-	-	5,000,800,000
확정급여의 재측 정요소	-	-	-	-	-	(87,013,894)	(87,013,894)
2015.12.31(전기말)	1,661,400,000	4,808,650,000	9,014,150,000	13,822,800,000	-	(2,819,823,703)	12,664,376,297
2016.1.1(당기초)	1,661,400,000	4,808,650,000	9,014,150,000	13,822,800,000	-	(2,819,823,703)	12,664,376,297
당기순이익(손실)	-	-	-	-	-	(5,491,905,017)	(5,491,905,017)
유상증자	2,024,275,000	54,846,310,736	(9,014,150,000)	45,832,160,736	-	-	47,856,435,736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	-	-	-	-	(1,312,500,000)	-	(1,312,500,000)
확정급여의 재측 정요소	-	-	-	-	-	(80,741,658)	(80,741,658)
2016.12.31(당기말)	3,685,675,000	59,654,960,736	-	59,654,960,736	(1,312,500,000)	(8,392,470,378)	53,635,665,358

6. 현금흐름표

(단위:원)

과 목	5기(2016.1.1~12.31)	4기(2015.1.1~12.3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53,984,750)	(1,603,255,632)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5,357,282,141)	(1,604,905,634)
당기순이익(손실)	(5,491,905,017)	(1,295,780,626)
조정항목	22,840,467	30,433,537
감가상각비	38,784,570	11,173,046
무형자산상각비	444,097,200	11,900,000
대손상각비		(55,000)
지급수수료		7,000,000
퇴직급여	58,273,680	20,696,148
이자수익	(518,314,649)	(20,280,657)
외화환산이익	(33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	111,782,409	(339,558,545)
매출채권의감소(증가)	(42,624,539)	5,500,000
기타수취채권의감소(증가)	(41,038,131)	12,390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369,049,756	(369,363,041)
기타지급채무의증가(감소)	65,417,488	5,980,816
기타유동부채의증가(감소)	1,469,494	18,311,290
사외적립금자산감소(증가)	(240,491,659)	-
2. 이자의수취	120,278,251	1,827,219
5. 법인세의환급(납부)	(16,980,860)	(177,21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838,179,723)	(2,909,189,53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3,548,609,666	18,432,000
단기금융상품의감소	9,500,000,000	
유형자산의처분		
주임종대여금감소	3,518,609,666	
기타대여금의감소	500,000,000	
임차보증금의감소	30,000,000	10,000,000
기타보증금의감소		8,432,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2,386,789,389)	(2,927,621,537)
단기금융상품의증가	45,100,000,000	500,000,000
주임종대여금증가	4,422,373,729	2,153,945,083
임차보증금의증가	300,000,000	120,000,000
기타보증금의증가	375,000	
단기대여금의증가	279,760,148	
유형자산의취득	71,754,362	153,676,454
무형자산의취득	6,570,997,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취득	2,341,529,150	
매도가능증권의취득	3,3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856,435,736	13,979,450,5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6,870,585,736	13,979,450,500
유상증자	56,870,585,736	5,000,800,000
신주청약증거금의 증가		8,978,650,5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9,014,150,000)	
신주청약증거금의 감소	9,014,15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6,235,728,737)	9,467,005,33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467,820,940	815,609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3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6)	3,232,092,537	9,467,820,940

Ⅲ. 재 무 제 표(연결)

1.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5기(2016.12.31)		제4기(2015.12.31)	
자 산				
유동자산		40,692,195,943		10,863,381,412
현금및현금성자산	3,592,329,456		9,467,820,9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0,152,506		18,453,438	
기타유동금융자산	478,141,338		1,005,000,000	
기타유동자산	4,374,526		371,889,777	
당기법인세자산	17,198,117		217,257	
단기금융상품	36,100,000,000			
비유동자산		12,893,420,719		2,075,359,109
종속기업투자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	1,987,5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885,671,885	
유형자산	1,913,417,971		154,887,224	
무형자산	6,161,699,800		34,800,000	
기타비유동자산	2,830,802,948			
자 산 총 계		53,585,616,662		12,938,740,521
부 채				
유동부채		200,073,474		133,186,49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343,492		107,926,004	
기타유동부채	26,729,982		25,260,488	
비유동부채		39,701,411		141,177,732
순확정급여부채	39,701,411		141,177,732	
부 채 총 계		239,774,885		274,364,224
자 본				
자본금	3,685,675,000		1,661,400,000	
기타불입자본	59,654,960,736		13,822,80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1,251,422,107)			
이익잉여금	(8,743,371,852)		(2,819,823,703)	
자 본 총 계		53,345,841,777		12,664,376,29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3,585,616,662		12,938,740,521

2. 연결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5기(2016.1.1~12.31)	4기(2015.1.1~12.31)
매출	38,749,581	-
영업비용	6,397,864,261	1,307,222,903
영업이익(손실)	(6,359,114,680)	(1,307,222,903)
기타영업외수익	570,322,809	20,380,924
기타영업외비용	54,014,620	8,938,64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842,806,491)	(1,295,780,626)
당기순이익(손실)	(5,842,806,491)	(1,295,780,626)

3.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5기(2016.1.1~12.31)	4기(2015.1.1~12.31)
당기순이익(손실)	(5,842,806,491)	(1,295,780,626)
기타포괄손익	(1,393,241,658)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0,741,658)	(87,013,89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12,500,000)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7,236,048,149)	(1,382,794,520)

4. 연결자본변동표

(단위:원)

제 5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 4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신주청약증거금	소 계			
2015.1.1(전기초)	996,400,000	472,850,000	35,499,500	508,349,500	-	(1,437,029,183)	67,720,317
당기순이익(손실)	-	-	-	-	-	(1,295,780,626)	(1,295,780,626)
주식청약증거금	-	-	8,978,650,500	8,978,650,500	-	-	8,978,650,500
유상증자	665,000,000	4,335,800,000	-	4,335,800,000	-	-	5,000,800,000
확정급여의 재측 정요소	-	-	-	-	-	(87,013,894)	(87,013,894)
2015.12.31(전기 말)	1,661,400,000	4,808,650,000	9,014,150,000	13,822,800,000	-	(2,819,823,703)	12,664,376,297
2016.1.1(당기초)	1,661,400,000	4,808,650,000	9,014,150,000	13,822,800,000	-	(2,819,823,703)	12,664,376,297
당기순이익(손실)	-	-	-	-	-	(5,842,806,491)	(5,842,806,491)
유상증자	2,024,275,000	54,846,310,736	(9,014,150,000)	45,832,160,736	-	-	47,856,435,736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	-	-	-	-	(1,312,500,000)	-	(1,312,500,000)
해외사업장환산외 환차이	-	-	-	-	61,077,893	-	61,077,893
확정급여의 재측 정요소	-	-	-	-	-	(80,741,658)	(80,741,658)
2016.12.31(당기 말)	3,685,675,000	59,654,960,736	-	59,654,960,736	(1,251,422,107)	(8,743,371,852)	53,345,841,777

5.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원)

과 목	5기(2016.1.1~12.31)	4기(2015.1.1~12.3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606,420,729)	(1,603,255,632)
1.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5,709,718,120)	(1,604,905,634)
당기순이익(손실)	(5,842,806,491)	(1,295,780,626)
조정항목	22,840,467	30,433,537
감가상각비	38,784,570	11,173,046
무형자산상각비	444,097,200	11,900,000
대손상각비		(55,000)
지급수수료		7,000,000
퇴직급여	58,273,680	20,696,148
이자수익	(518,314,649)	(20,280,657)
외화환산이익	(33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	110,247,904	(339,558,545)
매출채권의감소(증가)	(42,624,539)	5,500,000
기타수취채권의감소(증가)	(41,038,131)	12,390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367,515,251	(369,363,041)
기타지급채무의증가(감소)	65,417,488	5,980,816
기타유동부채의증가(감소)	1,469,494	18,311,290
사외적립금자산감소(증가)	(240,491,659)	-
2.이자의수취	120,278,251	1,827,219
5.법인세의환급(납부)	(16,980,860)	(177,21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186,584,718)	(2,909,189,53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3,548,609,666	18,432,000
단기금융상품의감소	9,500,000,000	
유형자산의처분		
주임종대여금감소	3,518,609,666	
기타대여금의감소	500,000,000	
임차보증금의감소	30,000,000	10,000,000
기타보증금의감소		8,432,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1,735,194,384)	(2,927,621,537)
단기금융상품의증가	45,100,000,000	500,000,000
주임종대여금증가	4,422,373,729	2,153,945,083
임차보증금의증가	300,000,000	120,000,000
기타보증금의증가	375,000	
단기대여금의증가	244,133,338	
유형자산의취득	1,797,315,317	153,676,454
무형자산의취득	6,570,997,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취득		
매도가능증권의취득	3,3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856,435,736	13,979,450,5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6,870,585,736	13,979,450,500
유상증자	56,870,585,736	5,000,800,000
신주청약증거금의 증가		8,978,650,5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9,014,150,000)	
신주청약증거금의 감소	9,014,15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5,936,569,711)	9,467,005,33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467,820,940	815,609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1,078,22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6)	3,592,329,456	9,467,820,940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5조(공고방법)	이 회사의~~~인터넷 홈페이지(gobpu.com)에 게재한다.	이 회사의~~~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puholdings.com)에 게재한다.	주소 변경
10조(신주인수권) (2)	<p>1)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경우</p> <p>2)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경우</p> <p>3)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경우</p> <p>4)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경우</p> <p>5)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경우</p> <p>6) "BPU"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BPU"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의확대 등에 따라 국내, 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각종 연기금, 및 투자조합 포함)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기술의 도입이나 회사 홍보의 필요로 제휴회사나 유명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1)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우</p> <p>2)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우</p> <p>3)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우</p> <p>4)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우</p> <p>5)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우</p> <p>6) "BPU"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BPU"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각종 연기금, 및 투자조합 포함) 및 제휴회사, 개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BPU"가 기술도입이나 회사홍보,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휴회사,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법 개정
12.(주식매수선택권)	<p>"BPU"는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운용한다</p> <p>(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임원 및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액면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년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부여 할 수 있다.</p> <p>(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p> <p>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당해 년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른다.</p> <p>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p> <p>(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BPU"의 설립, 투자, 증자, 경영, 국내외 영업,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BPU"의 비상임 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임직원, 주주로 한정 한다.</p>	<p>"BPU"는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운용한다</p> <p>(1) 이 회사는 임.직원(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 직원을 포함한다)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1)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자</p> <p>2)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p> <p>3)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 직원</p> <p>(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투자, 증자, 경영, 국내외 영업.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p> <p>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p> <p>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p>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p> <p>(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법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p> <p>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1(“BPU” 임직원이 아닌 경우)결의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부터 5년내에 행사 할 수 있다.</p> <p>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2(“BPU” 임직원인 경우)결의일로 부터 6개월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와의 “주식매수선택권계약”에 따른다.</p> <p>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본인과 대표이사간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재임 혹은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동안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 혹은 퇴임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5)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BPU”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행사 기간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 한 경우</p> <p>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로 “BPU”의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p> <p>3) “BPU”의 파산, 해산, 합병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관련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가액</p> <p>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나.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p> <p>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한다.</p> <p>(9)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BPU”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행사 기간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 한 경우</p> <p>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로 “BPU”의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p> <p>3) 기타 관련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p>	
13조	(우선주식) (1)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33,000주로~~	(우선주식) (1) 삭제	
17조	(주주명부의 폐쇄) (1) "BPU"는~~~정지한다 (2) 위항의 경우 ~~~~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의 폐쇄) (1),(2) - (좌동) (3) "BPU"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19조	(전환사채의 발행) (1)전환사채는~~~발행 할 수 있다. (2)전환사채의~~~결의로 정한다.	(전환사채의 발행) (1) "BPU"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휴회사, 개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전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조문	변경전	변경후	비고
	<p>19조(전환사채의 발행) (1)전환사채는~~~발행 할 수 있다. (2)전환사채의~~~결의로 정한다.</p>	<p>(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를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p>	
20조	<p>(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1) "BPU"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휴회사, 개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4 조를 준용한다. (6) 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은 정관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22조	<p>(소집) (2)총회의 소집은~~~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소집) (2)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23조	<p>(소집통지) (1)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전자메일,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통신 매체, 스마트 폰을 이용한 통신매체를 통해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67% 이상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의결권 있는 ~~~ 같음 할 수</p>	<p>(소집통지) (1)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삭제</p>	
26조	<p>(주주총회의 결의및 의결정족수) (3),5)이사,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4)주주전원의 서면동의~~결의에 같음할 수 있다.</p>	<p>(주주총회의 결의및 의결정족수) (3),5)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4)삭제</p>	

조문	변경전	변경후	비고
29의 4	신설추가	(이사의 해임) (1)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직이사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결의요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34조	(이사의 의무) 신설추가	(이사의 의무) (3) "BPU" 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 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4)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6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신설추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3)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 이상, 이사에게 20억 이상을 지급한다. (4)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 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37조	(이사회) (1)"BPU"의 이사가~~~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이사회) (1) "BPU"의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분기 종료후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41조	(이사회회의 결의) (1)이사회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이사회회의 결의) (1) 이사회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조문	변경전	변경후	비고
45조	<p>(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p> <p>(1)"BPU"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p> <p>(2)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 전부터 "BPU"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p> <p>(1) "BPU"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p> <p>(2) "BPU"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3) 감사는 상기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1)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p> <p>(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6) 이 회사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7) 이 회사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p>	
46조	<p>(이익금의 처분)</p> <p>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p>(1) 기부금 및 투자금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스타업펀드 출연금}</p> <p>(2)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p> <p>(3) 별도적립금 약간 (4) 주주배당금 약간 (5) 임원상여금 약간 (6) 후기이월금 약간 (7) 임의 적립금</p>	<p>(이익금의 처분)</p> <p>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p>(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p>	
48조	<p>(중간 배당)</p> <p>중간배당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p>(1)직전 결산가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중간 배당)</p> <p>(1)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하여 연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p>(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6)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부 칙 신설추가	부 칙 54.(개정) 2017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하였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이사 임기만료 및 신규이사 선임에 따라 아래 이사 후보자를 선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여부	경력	직위	추천인	최대 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
카를로스아 트노바레즈	63.1.2	2	중임	비피유홀딩스이사	사내	이사회	없음	없음
Angela Yin Cesal	46.8.28	1	신규	사업	사외	이사회	없음	없음
김귀남	56. 2. 17	1	신규	경기대 교수	사외	이사회	없음	없음
오국진	54. 2. 9	1	신규	전) 학교장	사외	이사회	없음	없음
정재진	62. 9. 1	1	신규	단국대 교수	사외	이사회	없음	없음
이기동	60.11.27	1	신규	공무원	사외	이사회	없음	없음
하민석	66.10.2	1	중임	밸류인베스트투자 심사	기타비 상무	이사회	없음	없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 36조에 의거,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당해 보수 한도액 :50억원(전기 보수 한도액 10억원)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415조 및 당사 정관 제36조에 의거, 감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해 보수 한도액 : 1억5천만원(전기보수한도액 1억5천만원)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의 건

당사 정관 제36조에 의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수기준)

근속연수	직책		
	감사/이사/상무	전무/부대표이사	대표이사
5년이하	1	2	3
5년초과	1.5	3	5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상기 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후 한달내로 지급한다.